

벤처기업의 문제와 활성화방안 연구*

최 승 욱** · 김 희 규***

〈 목 차 〉

- | | |
|---------------------------------|-------------------------|
| I. 서론 | V. 벤처기업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접근 |
| II. 벤처기업의 통합적 접근 | VI. 요약 및 결론 |
| III. 벤처기업의 문제와 창업위기 구조 및 생존적 접근 | 참고문헌 |
| IV. 벤처기업의 자금 및 세제 활성화 접근 | Abstract |

I. 서 론

벤처기업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도 등으로 퇴출되는 벤처기업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기업이 91개라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1998년 말까지 3개에 불과했으나 1999년 1분기 4개, 2분기 6개, 3분기 12개, 4분기 50개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2000년 들어서는 1분기까지 91개가 퇴출됐고, 지난 4월에는 5개 벤처기업이 지정 취소됐다. 퇴출사유는 부도 등에 따른 휴·폐업이 86건으로 대부분이고, 평가기준 적용 잘못 4건, 신청서류 허위기재 1건 등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퇴출 벤처가 늘어나는 것은 본격적으로 벤처기업의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앞으로 수익모델이 확실하지 않은 벤처기업의 퇴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 논문은 1999년 교육부 우수 자연계 연구소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정보대학 사회경영학부 교수

*** 경남정보대학 조형건설학부 교수

· 한편 벤처기업은 2000년 3월에 가장 많은 458개가 생기는 등 최근 4개월간 1,000개 이상이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며 4월말 현재 총 6,004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첨단 신기술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영의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통상적으로 벤처기업, 벤처비즈니스, 모험기업, 신기술 사업, 기술 집약적·지식집약적 중소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하이테크기업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일반 중소기업과의 차이점은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경영전략이 성공할 경우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지만 상대적으로 실패 위험도 높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벤처평가우수기업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정의되며, 벤처기업의 유형별 분류에 따라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가 다르다.

그러나 근래 많은 벤처기업이 창업되지만 상대적으로 퇴출, 도산, 정체되는 기업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이어서 성공률은 3.8% 이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 부각에 대하여 현행 우리 나라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벤처기업의 통합적 접근

1. 벤처기업의 유형별 정의

우리 나라에서 쓰고 있는 벤처기업의 다양한 유형별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이다. 여기서 투자라 함은 주식, 무담보 전환 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위는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주식, 무담보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주식에 한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이며 증빙은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 증

명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등이다.

1.2 연구개발 투자기업

직전 사업 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 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하며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개업을 신고한 자)가 작성한 서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업현황 및 실태 조사표 등이다.

1.3 신기술개발기업

1.3.1 특허권 실용신안권 획득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 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포함),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5조에 의해 도입된 기술로서 동법 제26조에 의한 조세면제대상인 고도기술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 또는 25%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1.3.2 신기술 사업화 기업

개별 법률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 또는 지식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 또는 25%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범위는 특허권·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 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

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등이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기술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 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신기술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술개발완료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에 한하여 인정. 다만, 각목 중 우수신기술 이용 사업은 인증일로부터 3년내의 사업만 인정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사업(산업자원부)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우수신기술인증사업(NI), 기계류 · 부품 · 소재의 품질인증사업(EM) (기술표준원),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사업,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사업(정보통신부), 국산신기술 제품개발 이용사업, 신기술이용사업(KT),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 연구사업(과학기술부), 영상 ·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산업 또는 관광산업 중 창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문화관광부), 영상 · 음반 · 게임물 또는 관광사업 중 벤처기업 대상이 되는 창작신기술 또는 지식 집약도가 높은 사업의 범위, 창업 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 투자조합으로부터 총사업비용의 2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 등이다.

다음의 사업 중 당해 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0% 이상인 사업은 컴퓨터 그래픽 합성 등 디지털기술을 이용하거나 새롭고 독창적인 지식을 이용한 영화 · 방송프로그램 · 음반 · 비디오 또는 게임물 제작, 3D기법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단순 하청제작은 제외), 게임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에 한함), 주제공원, 국제회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독특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업,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환경부), 건설신기술이용사업(건설교통부),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증빙은 개별 신기술사업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 · 기술지도사가 작성한 서류가 있다.

1.4 벤처평가 우수기업

창업중이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 의장권(의장등록출원증인 기

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 신기술을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신기술사업화기업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이다.

범위는 창업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자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기업,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등이다.

증빙은 벤처기업 평가서, 평가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이다.

2. 신기술개발 기업기준 사업유형

신기술개발기업 기준 중 기관별 법률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1〉 신기술개발 기업기준 유형

주관기관	사 업 명
산업자원부	산업기반 기술 개발사업,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사업, 첨단 기술제품 개발사업, 청정 생산 기술 개발사업
기술표준원	우수 신기술 입증 사업(NT),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사업(EM)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사업,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사업
과학기술부	국산신기술 제품개발 이용사업, 신기술이용사업(KT),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문화관광부	영상·음반·비디오물·게임물산업 또는 관광사업 중 창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총사업비용의 20% 이상을 출자 받은 사업 - 다음의 사업 중 당해 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 이상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그래픽 합성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거나 새롭고 독창적인 지식을 이용한 영화·방송프로그램·음반·비디오 또는 게임물 제작 · 3D기법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단순 하청 제작은 제외) · 게임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에 한함) · 주제공원, 국제회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독특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업

환경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이용사업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

- 1) 신기술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술개발완료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에 한하여 인정. 다만, 정보통신부의 우수신기술사업은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업만 인증
- 2) 벤처기업평가기관 : 창업중이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 의장권(의장특허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 신기술을 사업화 하는 기업으로서 신기술사업화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등이 벤처기업의 범위 (벤처평가우수기업)에 포함되는 자를 판단하는 기관
- 3)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는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기타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있다.

3. 벤처기업의 요건

재정경제부가 1999년 8월부터 실시키로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증명요건과 벤처기업 증명 검토서류 및 세금감면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1 벤처기업 확인증명요건

- 1) 벤처캐피탈 투자총액이 20% 이상
- 2)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 중 R&D 지출이 5% 이상
- 3)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의한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 이상
- 4) 위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3.2 벤처기업 증명 검토서류

- 1)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의 투자 증명서 -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
- 2) 투자 실적 관련 회계 증명서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 3) 특허 등록원부 또는 출원 증명서 - 특허청장

3.3 벤처기업 세금 감면조치

- 1) 벤처기업 확인일 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록세 각각 50%씩 감면
- 2) 확인일로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100% 감면
- 3)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는 등이다.

4. 벤처기업에의 지식경영적 사고 도입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경영적 사고 도입을 위하여 지식경영의 기본 이론적 논리를 명확히 하고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에의 지식경영도입을 위한 지식경영에 있어 토대가 되는 원리는

첫째, 기업혁신에 필요한 최고수준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들에게 최고의 수준으로 보답한다는 것이다. 고객은 지멘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속도에 의해 그들의 성공이 좌우된다고 믿는 만큼 인력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고객들에게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익을 어떤 식으로든지 고객들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고객들의 애프터서비스를 의미하며 기존 고객들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믿음이다.

셋째, 기업활동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 구조의 리더십과 함께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은 활력 넘치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도전정신에 의해 지탱된다는 믿음이다.

넷째, 반드시 파트너십을 통해 윈-윈전략을 펼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이다(매일경제 99/09/13).

외환위기 이후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지식경영, 가치경영과 같은 회사의 근본을 강화시키는 경영 혁신기법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물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성과가 단기에 드러나기 힘든 지식경영도 과거의 다운사이징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처럼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영은 회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가장 준비할 수 있는 경영기법으로서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해법이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수치화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재무제표상의 재무성과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관련 주가의 높은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는 재무적 경영성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의 미래성장성, 기술력 및 노하우가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핵심요소가 된다.

지식경영에서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상품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회사가 전략적으로 보유해야 할 핵심 지식을 파악한다.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전 직원들은 전사지식지도(Knowledge Map) 중 자신의 위치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지식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갖는다.

우리의 고객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기업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전 임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기업은 경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활동을 도출하고 추진함에 있어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셈이다. 또 지식경영시스템은 경영 혁신 활동의 결과물과 그 진행과정상의 노하우들을 지식 자산화할 수 있는 저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활동들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주는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우리가 당면한 21세기는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변화에 빨리 적응해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거나 변화 자체를 발생시키고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달려 있다. 인터넷 혁명에 의해 조성된 새로운 경영환경은 모두에게 낯설다.

따라서 현재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이 새로운 경영환경에서 전략적 고지를 빨리 선점해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혁명이라는 변화는 생산, 구매, 판매 등의 특정 기능 부서에서 대처하거나 기존의 사고체계의 틀을 깨지 못하는 관리자가 담당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전자상거래 기업환경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산의 업무를 재구축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새로운 생각의 방식에 익숙한 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모여 학습, 창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식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주제별 연구회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해 직원들이 함께 학습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적용하여 업무를 혁신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한다.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능력, 지식창출 프로세스를 활성화하여 필요한 지식을 획득, 공유, 자산화할 수 있는 무한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최대한의 업무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임금인상이나 승진과 같은 경영자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과 직원간의 제로섬게임 성격을 갖고 있다. 앞선 기업들은 지식경영을 통해 직원들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며 전사적인 일체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경영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99/08/02).

5. 통합적 관점의 벤처기업 창업

소수의 핵심창업자가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상업화를 기본동기로 하여 설립한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기술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데 중점을 둔 회사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중소기업법상의 의미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 회사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인수 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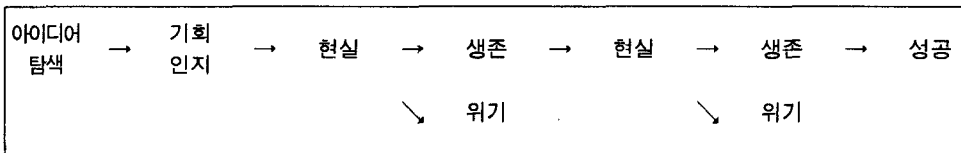
이용한 매출실적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공업발전법의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사업화 하는 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기술집약적 기업을 말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 중소기업의 특징은 소수의 기술 창업자가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은 위험부담이 크고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의 특성은 생존상의 위기가 매우 높다. 미국의 경우 1985년부터 10년간 실리콘밸리 100대 기업 중 34개 회사만이 100대 이내의 순위를 유지하였고 나머지는 소멸(매수, 도산)되었다.

하나의 기술로 시장을 창출하고 독점하므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고객수요 변화에 적극적 대응과 지속적 기술개발을 필요로 한다. 초창기 핵심 창업자로 시작하며 점차 기업성장 단계를 따라 발전하기 위해서 각 단계마다의 위기관리와 극복을 위해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요구된다.

벤처기업의 창업은 마치 동물과 식물이 주어진 생태적 틈새에 적응하여 생존하는 것처럼 벤처창업도 소요자원과 주어진 제약조건 및 사업기회가 교차하는 틈새에서 탄생하고 생존한다.

벤처창업은 창업자·창업기회·환경·자원에 의해 계속적 생존을 해야 하는 자주적·영속적 존재(going concern)의 탄생이다. 벤처창업은 현실(환경변화)에서 여러 번의 위기와 생존을 거쳐 순간적 또는 일정기간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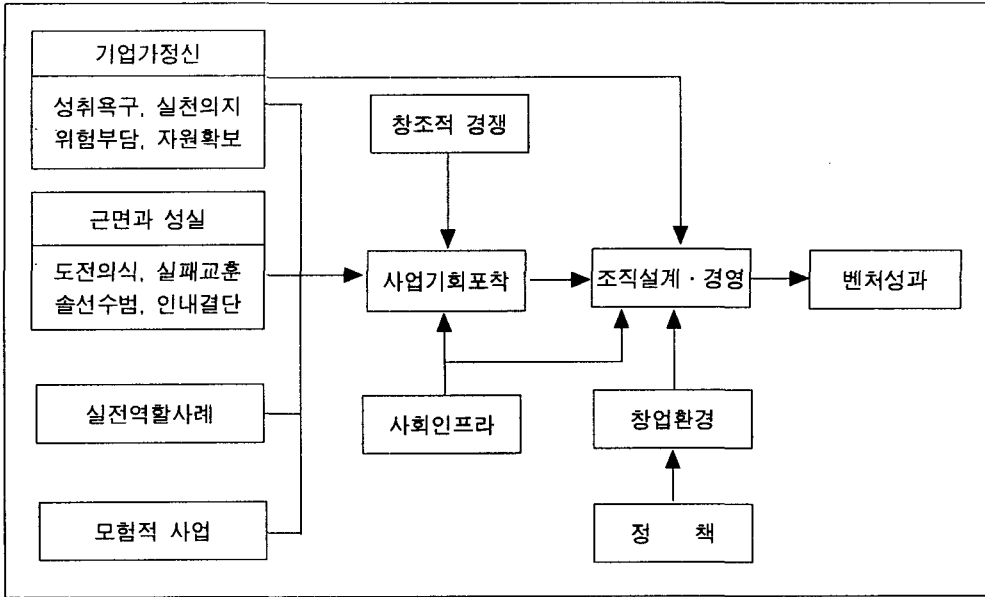


〈그림 1〉 벤처기업의 환경적 생존 과정도

벤처창업에는 해당산업의 특성으로 주어진 수명의 장·단점이 있으며 벤처창업의 성공에는 대상이 되는 벤처사업의 사업성이다 창업자의 모성적 성의와 노력 그리고 지원기관과 환경이 가치의 문화적 통합일 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통합적 벤처창업 성공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text{벤처창업의 성공} = f(\text{창업자의 자질과 경험} \times \text{창업자의 모성 본능심과 성실성} \times \text{사업기회의 크기와 기간} \times \text{자원조달 능력} \times \text{사회네트워크} \times \text{지원적 창업환경})$$

이상과 같은 벤처창업의 함수를 함수요인별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림 2〉 벤처창업 요인적 과정

6. 국내 벤처기업 추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재 6,004개(2000, 4월 현재)의 벤처기업이 있으나 미국 등에 비해 취약한 수준에 있다.

〈표 2〉 벤처기업 현황

	한 국	미 국	일 본
개념	주요 기술집약형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turn)	창조적 활동
범위	벤처캐피탈 투자 R&D 투자 5% 이상 특허기술 사업화 등	벤처캐피탈 투자	R&D 투자비중 3% 이상
업체수	6,004	87,000	5,300

자료 : 중소기업청 통계자료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은 미국에 비해 위험성과 기술수준이 낮아 신기술·기술집약형 중소

기업으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며 미국과 우리 나라의 차이점은 기술성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기술이나 우리 나라는 도입 또는 개량기술이며 시장규모는 미국은 세계시장 겨냥이고 우리 나라는 수입대체 또는 일부 수출형이고 성공률은 미국이 5% 미만이고 우리 나라는 3.8% 미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성과면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3배, 매출액증가율 3배, 영업이익률 4배 등 고성장·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벤처기업은 21세기 산업구조에 적합하여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중후장대한 대기업 구조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경박단소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우위를 갖출 수 있는 진입장벽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표로서 비교하면 <표 3>과 같을 수 있다.

<표 3> 벤처기업의 비교지표

	벤처기업(1998)	일반기업(1997)	대기업(1997)
매출액증가율	21.9	7.0	12.9
영업이익률	19.4	4.9	9.7
R&D비율	24.1	0.7	1.5

<표 4> 지식·정보사회의 변화구조

	20세기 : 산업사회	21세기 : 지식·정보사회
생산성	자본·노동	지식, 기술, 정보, 통신
생산방식	소품종 대량생산(중후장대)	다품종 소량생산(경박단소)
자본조달	간접금융, 자기자본, 은행	직접금융, 자본시장, 대중자본
경영구조	조직, 협동, 기업가 정신	network, 창출, 아이템 개발
고용	종신고용, 기간안정	유연구조, 계약제, 임시직, 파견제
임금	정액제	계약급여, 연봉제, 성과급

불확실성에 대해 기민한 대처능력이 가능한 면역적 체질보유로서 21세기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유연성과 기민성임이 필요한 것이며 기술 및 시장의 변화가 빨라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장치산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자원과잉으로 자원의 동원보다는 기회의 포착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벤처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미국은 80년대 경기침체에 약 4,4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90년대 이후 벤처기업 활성화로 약 7,3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벤처기업은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의 결합체이므로 벤처기업이 많아지면 자연히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므로 우수한 인력확보가 벤처기업 성공의 관건이므로 기업구조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변화될 것이다.

결국 벤처기업은 상상력과 가능성의 사업이므로 세분화된 기능중심, 성과중심, 공유중심, 가상중심, 계층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Ⅲ. 벤처기업의 문제와 창업위기 구조 및 생존적 접근

1. 한·미·일 벤처기업 특성비교

벤처기업의 운영상의 애로와 창업 위기에 대한 도출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벤처기업 내용 특성을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표 5〉 한·미·일 벤처기업 특성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대상분야	국내 기술수준 기술조건에서 기술집약 제품에 집중	첨단기술에 약 80% 집중	첨단기술의 집중도가 24%로 낮고 유통·서비스업의 지원 이 상대적으로 큼
지원시기	도입기 성장단계 집중	기업화 초기단계 34% 성장단계 54% 기타 12%	성장단계에서의 지원이 많음
대상기업	중소기업 신설기업 장외등록 직전단계	중소기업, 신설기업에 대한 투 자 많음	중소기업 11~15년 경과된 기업에 많 음
회수기간	3 ~ 7년 정도	3 ~ 4년 이내	5 ~ 10년 경과
투자성과	기술개발 신기술 기업화 벤처기업의 육성	신기술의 상품화 신시장 개척 산업구조 고도화	신기술의 상품화 기술개발 산업조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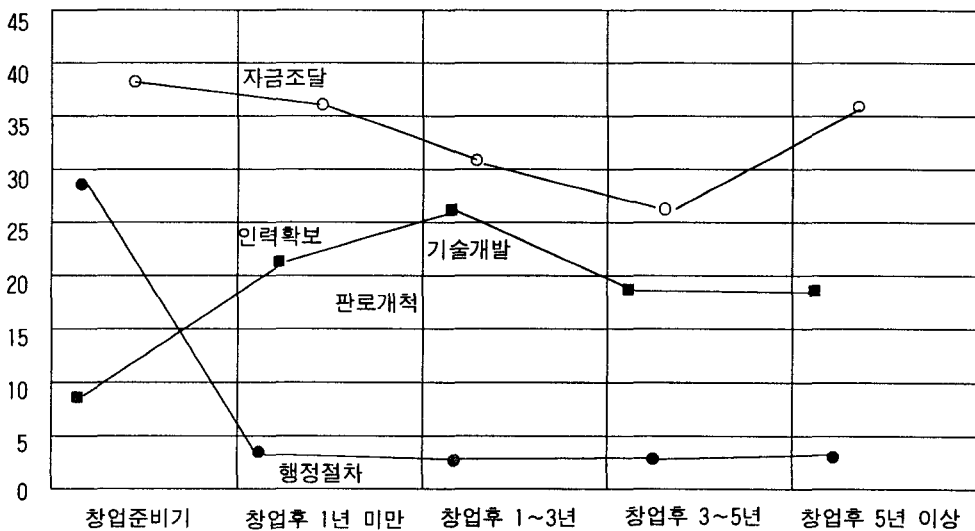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 운영과 감독기관 및 금융, 기술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난 각종 조

사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애로요인은 자금조달, 2차 기술개발, 우수인력확보, 신품로 개척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절차면에서는 최근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서비스가 매우 변화된 모습으로 개선되었으나 다소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지원으로 인한 자금 유실과 전용 및 악용사례가 많고 중복지원의 폐단으로 선의적 피해가 만연하여 최근 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방지와 더불어 정부 행정절차 및 서비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문제요인의 시계열적 추출

이상과 같은 특성과 애로적 내용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초기 창업위기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살펴보면 창업과정에서 제품계획과 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현실적 문제와 목표지향간의 심한 괴리가 첫 갈등으로 위기직면 초기가 되는데 당면한 문제와 예상인지 되는 문제의 차이가 가장 큰 위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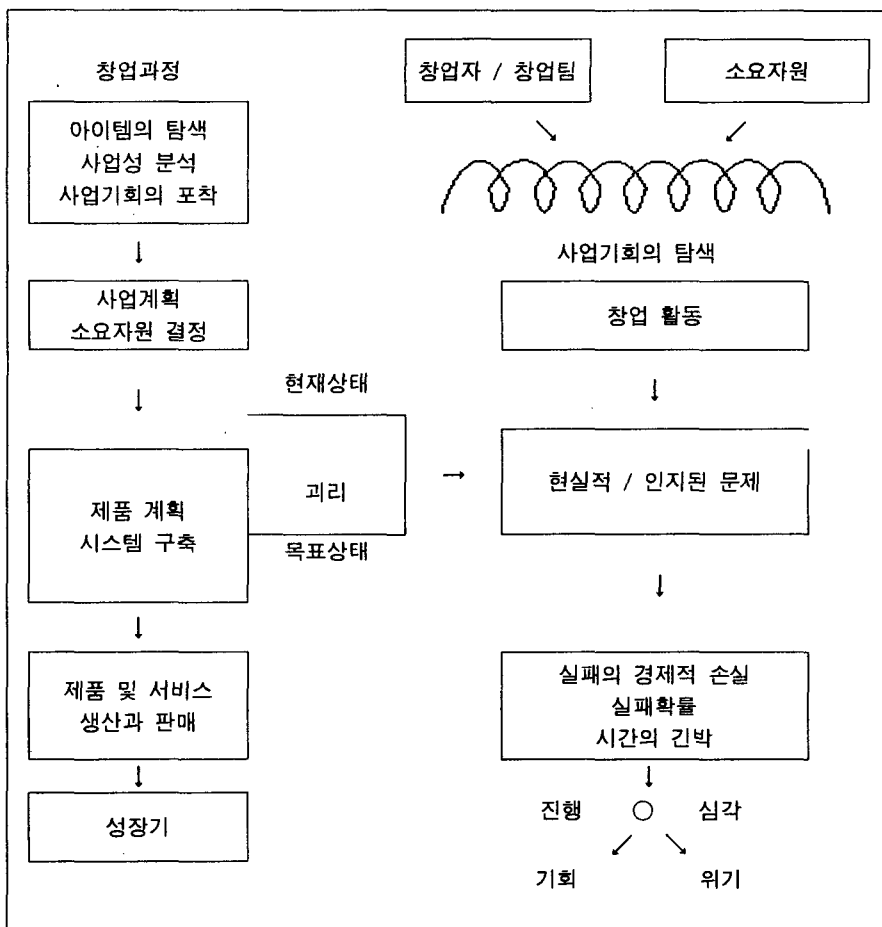
그러한 반면 운영중인 기업은 대체로 2~3년 경과시 초기 아이템 창출 제품에 대한 후속 대체 제품 빈곤으로 급격한 매출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타사 진입 허용 및 대체용도 제품출시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재정악화가 가장 위기국면이 되어진다(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1999. 10).



〈그림 3〉 벤처기업의 시계열적 애로 정도 추이

3. 벤처기업의 문제대처와 생존

벤처기업의 창업위기에 대한 개념구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4〉 창업위기에 대한 개념구조

이러한 문제와 창업위기구조를 극복한 벤처기업의 현실적 성공 벤처생존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무적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현대 경제연구원, 1999).

(1) 인재확보

중소기업이란 한계 때문에 인재를 제때에 마음대로 구해 쓰기 힘들게 현실이다. 따라서 인맥을 활용하거나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를 통해 수준 높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벤처신화를 만들어 내려면 전문 경영인 영입도 고려해야 한다.

(2) 창조적 긴장감 유지

조직이 확대되고 신규인력의 유입으로 인력의 몰타기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창업 당시와 같은 수준의 긴장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새로운 도전 목표를 계속 설정함으로써 구성원의 집중과 그에 따른 성취감의 사이클이 구축되도록 한다면 조직내 긴장감을 이어갈 수 있다.

인텔의 신화를 만들어낸 앤디 그로브(Andy Grove) 회장의 말처럼 “자기만족이야말로 기업경영에 가장 큰 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조직내부 혼란 방지

조직이 확대되고 권한이양의 범위가 커질수록 창업자에게도 조직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인력의 할당, 업무 프로세스의 설계,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등이 주요과제가 된다.

(4) 기술개발 열정유지

벤처기업은 대부분 창업자의 핵심기술 또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창업자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손을 떼고 경영 및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기술의 지속적 개발, 개선 등에 소홀하게 돼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단명을 불러 올 소지가 있다.

(5) 모방확대 신중

사업성공 후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의 투자결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초기 창업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심하게 겪었던 벤처창업자들에게 이것은 황홀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자금을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흔히 과욕이나 무계획적 모방적 지출이 종종 나타난다.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이 충분히 안정되기도 전에 다른 벤처로 확대해 가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

(6) 연구개발과 지식경영

벤처기업의 생명은 연구개발과 지식경영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 경영시스템 그리고 최적화된 조직시스템이다. 그 중 가장 문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식공유경영에 의한 위험관리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핵심적 생존력이 될 것이다. 최근 연구개발과 지식공유 경영의 한계로 인한 도산 및 인력의 대기업 회귀 추세가 두드러지고 벤처기업에 대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아 코스닥시장에서의 육상증자에도 애로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실무적 벤처 성공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간의 연구들은 대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다.

첫째, 기업가적 행동성향 연구로서, 벤처기업의 성과는 창업인 특성과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산업조직론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산업의 규모나 자본, 제품 이질성과 같은 구조적 특성들이 산업진입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예측하였다. 셋째, 전략경영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수행된 연구로서 기업전략이 벤처기업의 성과와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홍성도, 1997).

- ① 벤처기업의 창업자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도전의식과 예리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모험정신이 있어야 한다.
 - ② 기초과학이 발달하고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높아 사업화 내지 기업화 할 수 있는 대상기술이 많아야 된다. 미국에서 벤처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 ③ 벤처기업의 창업이 촉진되도록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양질의 벤처캐피탈이 많아야 된다. 양질의 벤처캐피탈이 조성되지 못하고 제한적일 때 벤처기업의 창업은 한계가 있다.
 - ④ 무엇보다 내수시장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 유용한 기술이라도 구매력이 없거나 잠재수요가 없을 때는 벤처기업이 창업되기 어렵다.
 - ⑤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 이 중 특히, 벤처기업이 필요한 운전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IV. 벤처기업의 자금 및 세제 활성화 접근

1. 벤처기업 육성 자금지원

벤처기업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운영자금 문제이다.

운영자금은 대체로 창업자 또는 동업자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의 차입이 주축이고 기타 엔젤들로부터 지원받거나 합작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은 자본비용과 한도성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육성 자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1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있는 기업(신청접수일 기준)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① 대학·우수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창업자 ② 발명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보유자 ③ 해외 유학생, 해외 기업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④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거나 졸업자 중 창업하려는 경우 ⑤ 기타 기술성이 있고 창업한지 7년 이내인 기업 등이 대상이 된다.

지원조건으로 지원한도는 동일 기업당 5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이고 지원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대출금리는 연 7.5%이다. 심사와 평가기준은 신청자의 기술성, 사업성, 타당성 및 신용보증가능금액 등을 중심으로 기술신보에서 별도의 자체업무 지침으로 운영되어진다.

평가 후 보증가능금액을 사전에 심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는데 평가수수료는 보증서발급 대상자에 한하여 건당 30만원을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진공이사장은 최종 지원결정사항을 창업자 및 기술신보에 즉시 통보하고, 금융기관에 용자 추천하며 기술신보는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일 이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15일 이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예비창업자는 사업개시일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중기청장 및 중진공이사장은 창업지원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 여부 및 경영상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중진공이사장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된 창업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지원중단 및 지원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1.2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있는 기업
-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벤처기업(예비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 ③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APT형 공장 입주 예정기업(예비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 ④ 자가공장 마련을 위하여 경매를 통하여 기존공장(설비포함)을 매입하는 예비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법원, 은행 및 성업공사의 경매를 통한 자금지원에 한함)
- ⑤ 모기업으로부터 분사한지 3년 이내의 중소기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등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는 예비 창업자 및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은 동일 기업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이고 확인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APT형 공장입주 예정 기업의 임차 및 구입자금, 경매를 통해 자가공장 마련기업 및 중소기업은 동일 기업당 5억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고 대출금리는 연 7.5%이다.

지원의 타당성 평가 및 지원결정을 위하여 중진공에서는 신청서 등에 대한 사업성, 기술성 및 지원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중소기업창업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은 중진공이사장이 지원의 타당성 평가를 별도로 제정하여 신속히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신청자(업체)에 대한 평가 및 지원금액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자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을 창업자 및 해당기업, 신용보증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즉시 통보하며 자금지원은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거나 선정된 대출취급기관을 통하여 지원하게 된다.

1.3 투자회사 자금지원

투자회사에 대한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회사이다. 융자 제외 대상은 대주주 부도 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 및 관련법령 위반 투자회사이다. 융자조건으로 금리는 연 6.5%이고 상환조건은 5년(원리금 일시상환)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회사의 투자지원은 창업 후 14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규정 제12조에 의한 투자금지 대상은 제외된다. 투자방식은 주식,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프로젝트 투자 등이다.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회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나 지원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자금이 회수된다. 특히, 이 제도로 지원되는 자금은 자본금, 차입금 등 기타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우리 나라 벤처창업자금지원 평가사례

앞에서 본 자금지원에 대한 기관별 평가의 평가 기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정보통신부의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경영관리능력 (20점)	경험수준(5점)		학력 및 경력
	경영자의 자질(5점)		조직관리 및 위기대처 능력 등
	사업자	사업운영상태(5점)	사업의 이해도 등
		경영실적(5점)	매출액 경상이익률
<비사업자>창업준비상태(10점)		사업의 이해도, 과제선정경위 등	
시장성 (30점)	시장규모(5점)		시장규모의 증가정도
	시장성격(5점)		독점성, 영속성, 성장성, 안정성 여부
	경쟁상황(10점)		경쟁사의 관리 여부
	가격경쟁력(10점)		경쟁제품 대비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사업계획 타당성 (50점)	판매계획의 타당성(10점)		사업규모 대비 판매계획의 적절성
	자금조달 및 운영상황(10점)		소요자금 규모 및 자금조달 비율
	추진일정의 적절성(5점)		계획의 합리성
	파급효과(5점)		산업효과
	기술개발환경(5점)		기술개발 여건
	중소기업우대(15점)		유망정보통신기업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			
기타			

2.1 정보통신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선정 평가

아래의 정보통신부 평가에서는 경영관리 능력분야 20점, 시장성 30점, 사업계획 타당성 50점으로 특히, 판매계획, 자금조달 및 운영, 추진일정의 적절성, 기술개발환경, 중소기업 우대, 경쟁상황, 가격 경쟁력 등에 중점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우대 평가하는 정보통신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대책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2.2 기술신용보증기금 선정 기술개발시범기업 선정 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개발시범기업 선정평가 내용은 경영능력 20점, 기술성 30점, 시장성 20

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요사항은 경영능력, 기술개발력, 기술 경쟁력, 시장규모 및 성격, 시장상황, 수익전망,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기술경쟁력 분야를 20점으로 책정한 것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성을 강조한 평가분야로 볼 수 있다.

〈표 7〉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경영능력(20점)	사업안정성(5점)	자기자본 비율(2점)
		매출액 경상이익률(1.5점)
		사업의 안정도(1.5점)
	경영능력(15점)	기술경험 수준(5점)
		경영자의 자질(5점)
		경영관리 능력(5점)
기술성(30점)	기술개발능력(1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3점)
		연구개발비 투자실적(2점)
		기술관련 인증 및 수상실적(2점)
		연구, 시험장비 및 주요생산시설(3점)
	기술경쟁력(20점)	기술의 우수성(10점)
		기술의 수명(5점)
기술의 활용도(5점)		
시장성(20점)	시장규모 및 성격(10점)	시장규모(5점)
		시장성격(5점)
	시장상황(10점)	제품경쟁력(5점)
		수요처 현황(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30점)	수익전망(12점)	판매계획의 적정성(6점)
		투자대비 회수가능성(6점)
	파급효과(6점)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3점)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3점)
	추진계획의 적정성(12점)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6점)
		추진일정의 실현가능성(6점)

2.3 지방자치단체 벤처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용 평가표

〈표 8〉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경영실적(20점) 사업자의 경우	자본구성(4점)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규모
	수익성(2점)	매출액 경상이익률
	사업규모(2점)	매출액 규모
	경영자(12점)	경험수준
경영능력		
기술성(40점)	기술의 내용(10점)	평가대상 기술의 보호상태(특허·실용신안 등)
		기술활용도(파급효과 및 연계 개발)
	기술의 난이도(10점)	기술개발의 난이도 및 타인의 모방 가능성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인력)
	기술의 완성도(5점)	기술의 완성 정도
	기술경쟁력(10점)	기존 및 유사기술과의 비교우위정도
기술의 독창성, 신규성		
대체기술 출현가능성(5점)	대체기술 출현 위험성	
사업성(20점)	시장규모 (5점)	시장규모의 증가정도
	시장성격 (5점)	독점성, 영속성, 성장성, 안정성 여부
	경쟁상황 (5점)	수요계층의 크기정도
		경쟁사의 과다 여부
가격경쟁력(5점)	경쟁제품대비 가격수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20점)	수익전망(5점)	투자비용대비 회수 가능성
	파급효과(5점)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효과
		관련업계의 저후방 파급효과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5점)	자기자금 조달비율의 정도
추진계획의 적정성(5점)	추진일정의 계획 대비 실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벤처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용 평가표상에는 경영실적 20점, 기술성 40점, 사업성 20점, 사업계획 타당성 2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경영자의 수준과 능력, 기술내용, 기술난이도, 기술경쟁력을 특별히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기술경쟁력의 중요성 못지 않게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은 인간이 경영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3. 벤처기업 세제지원

3.1 벤처기업 투자 세제지원

벤처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시 유형별 세제지원은 다음과 같다.

3.1.1 벤처기업 일반지원

투자액의 일부(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개인(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당해 연도 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된다.

다음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로서 개인(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지원이 있다.

3.1.2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 지원

투자액의 일부(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개인이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당해 연도 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되어진다.

3.1.3 벤처캐피탈지원

-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지원으로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된다.
- 2) 다음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로서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되어진다.

- 3)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50%)제도로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투·융자액의 50%를 당해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되어진다.
- 4) 등록세에 대한 특례로서 대도시 지역내에 창업투자회사 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가 배제(지방세법 제138조)된다.
- 5)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된다.
- 6)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로서 개인이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되어진다.
- 7)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불산입 제도로 개인이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3항)되므로 지원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3.1.4 투자조합 지원

-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로써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되어진다.
- 2) 증권거래세 면제로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된다.
- 3) 투자액의 일부(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제도로 개인이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인이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되어진다.

3.2 중소벤처기업 세제지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1 중소기업 일반지원

-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20%)제도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된다.
- 2) 투자준비금, 손금 산입으로 사업용 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소급하여 계상한 때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를 손금에 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된다.
- 3) 투자세액 공제(투자금액의 3%)제도로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된다.
- 4) 최저한 세율 차별(12%)제도로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12%로 대기업 15%보다 낮게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되어진다.

3.2.2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

- 1) 법인세법(조특법 제6조)상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창업자,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권지역 중 일부 지역제외)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 및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 2) 등록세법(조특법 제119조)상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가 면제된다.
- 3) 취득세법(조특법 제120조)상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어진다.
-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법(조특법 제121조)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되는 등이다.

3.2.3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조세특례

-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5년 이내, 50%)제도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된다.
-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제도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다만, 창업보육센터 설치 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쇄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되게 된다.

-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50%)제도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되어진다.
-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제도로써 창업보육센터 운영자의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의 20%)를 부과하지 아니(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한다.

3.2.4 기술인력개발 지원

- 1)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로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①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5%, ② 이외의 산업에서는 3%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한다.
-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제도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다음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㉞ 당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가 4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서 공제하는 방법 ㉟ 중소기업은 당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15%, 대기업은 5%(중소기업에 지출한 경우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서 공제하는 방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3 부담금 및 조사면제지원

부담금 감면제도로써 창업사업계획 승인 창업자(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에 대한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이익부담금 100%면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되어지고,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 중 50% 감면(농업 농촌기본법 제41조)되며,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산림전용부담금 중 50% 감면(산림법 제20조의 3)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기술연구집단지 단지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사항으로는 개발 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농지전용부담금(농업 농촌기본법 제41조), 대체조립비(산림법 제20조의 2), 산림전용부담금(산림법 제20조의 3), 농지조성비(농지법 제40조),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 교육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법 제12조) 등이 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 안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와 벤처기업 전용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미술장식 설치의무 면제(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제도도 유용한 지원일 것이다.

다음은 세무조사면제를 통한 지원제도로써 세무조사 면제기간이 지원대상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간 각종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난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납기연장제도는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경영여건이 있어 납기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를 서면으로 파악하여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수용된다.

납기연장을 신고납부기한이 도해하지 않는 세금은 대항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 연장하고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징수유예는 고지 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 이내 징수 유예하고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체납처분 유예는 성실납세자로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1년 이내 기간동안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하고 생산활동과 관련된 재산(기계장치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를 자제한다.

납세담보 완화는 자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조합, 협회 또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도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세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조세채권일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담보를 완화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제도로써 지원대상기업 중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 확인 없이 신고마감 후 10일 이내(법정기한 신고 후 15일 이내)에 최우선 처리 지급하고, 일반환급금의 경우에도 법정 환급기한(신고 후 30일 이내)내에 조기 처리하게 된다.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은 과세표준에 불산입 제도는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함으로써 개인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는 원천징수한다.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하게 되며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제도로써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부터 개인조합원이 받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하게 된다.

· 다음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제도로 기관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한다.

법인세 원천징수는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부터 기관투자자가 받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하게되는 등의 부담금 및 세부조사 면제제도를 통하여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V. 벤처기업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접근

1.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 모험자본)이란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기술과 사업전망에 기대를 걸고 투자하는 자본금이다. 다시 말해, 첨단기술사업 등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잠재성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기업화를 지향하는 벤처비즈니스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의 높은 자본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와 경영자문 등을 담당하는 투자자나 투자회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벤처캐피탈회사란 이런 자금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를 말하고 벤처자본가는 이런 돈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융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벤처캐피탈은 회사의 무형자산에 기대를 걸고 자본금으로 투자되어 주식소유와 자본이익을 원하는 돈이다. 하지만 융자는 담보(신용 또는 담보)를 잡고 회사에 빌려주는 돈으로 이자소득을 원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은 회사가 실패하면 회수할 수 없는 돈이다.

1946년 처음 미국에서 벤처캐피탈회사가 설립·운영된 이래 일본은 1963년, 한국은 실질적으로 1981년에 벤처캐피탈의 활동이 시작되어 세 나라 간의 제도적인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약 20년 전후의 차이가 있다(안상열, 1997).

〈표 9〉 한·미·일의 벤처캐피탈 환경 비교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투자조합, 출자자	연금(54%), 기금(22%), 법인, 개인(16%)	금융기관, 영리기관	해외자금, 모회사 금융기관
투자분야	컴퓨터(27%), 통신분야 (14%), 바이오테크(27%)	유통, 판매(20%) 성장성 증시	기계, 금속, 전기전자
투자시기	사업초기(30%), 사업확대기(52%)	10년 미만(37%), 10~20년(27%), 공개직전(36%)	창업중소기업, 최근 다양함
기업공개	7년	27년	19년
경영지원	적극적 지원 (임원파견) 경영지도, 기술자문	기업공개 지원	사후관리 경영지원 없음
경영참여	사업계획 총괄, 이사회참여 외부인력 활용	경영 불참	원칙적으로 불참
장외등록	나스닥시장, 1994년 : 4,902개	점두시장, 1994년 : 568개	장외시장, 1994년 : 340개
최근 분위기	1992~93년 Bio-tech 1994년 후 컴퓨터, 통신	중신고용해제 관심증대	규제완화 전자, 통신 선호

1.1.1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투자동향

벤처캐피탈의 기본역할은 신기술개발지원과 신기술의 기업화지원 그리고 창업지원 등이며, 보조적 역할은 벤처비즈니스에 경영이나 재무에 관한 조언을 해주거나 자문서비스 등의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벤처캐피탈회사들은 전통적으로 하이테크산업분야, 즉 유전자공학, 로봇공학, 컴퓨터산업 등의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최근 이들의 새로운 투자대상은 논테크산업 분야이다. 즉, 장난감, 패션가구, 식료품 등 소비재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

1.1.2 벤처캐피탈의 투자형태

(1) 자본투자(Equity Investment)

사업초기 또는 회사의 성장과정에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투자 후 5~7년 경과 후 출자한 지분을 장외시장이나 증권시장에서 현금화하기를 원한다.

(2)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벤처자본주식회사와 기업간의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이자율로 발행된 사채를 인수하여 자금 지원을 한다. 이와 같이 인수한 사채는 만기일 이전 사채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전에 계약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arranted)

투자자가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데, 이때 회사는 별도로 신주인수권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구입하면 다음 증자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준다. 물론 채권 구입시 인수할 주가와 개수를 정한다.

(4) 엔젤 캐피탈(Angel Capital)

벤처기업의 창업자는 설립초기에 자신의 자본을 중심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되고, 이에 부족한 자금은 친구, 친척, 동업자들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금을 엔젤 캐피탈이라고 하며, 또는 러브 머니(love money)라고도 부른다.

엔젤은 개인투자자가 신기술을 상업화할 목적으로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엔젤 캐피탈, 즉 엔젤 투자자(angel investor)를 말한다. 이는 개인이 최종 투자결정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엔젤 기금에 소액을 출자하여 투자나 투자 후 관리를 위임하는 시스템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벤처캐피탈회사들의 재원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엔젤 제도의 촉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아직 벤처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환경이 미성숙 되어 있는 실정이다.

(5) 기타 지원방식

조건부 융자(Conditional Loan)로서 투자자가 융자를 해 주는데 원리금 상환에 대신하여, 사업결과 발생하는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실시료(royalty)를 징수한다. 지원사업이 실패할 때에는 융자 원금의 일부만 회수하는데, 이것은 한국종합기술금융(KTB)에서만 취급한다.

약정투자는 일정기간 매출액 또는 약정투자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투자금 사용료를 받는다. 지원사업이 성공할 때는 약정투자금을 주식으로 바꾸어 자본 투자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면 약정투자금의 일부만 회수하는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취급한다.

1.1.3 우리 나라의 창업투자회사

우리 나라는 1970년대부터 설립을 시작하였는데 1974년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81년 한국기술개발법이 제정되고 이어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1981) 한국개발투자주식회사(1982),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1984) 등이 설립되었다.

그후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제정·공포로 11개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등 벤처캐피탈육성법에 따라 현재 50개 이상의 창업투자회사가 활동중이다.

우리 나라 벤처캐피탈에 대한 관계법률 3개는 벤처캐피탈의 취지와 업무 등을 다소 상이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0〉 우리 나라의 벤처캐피탈회사 비교

구 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설립법	신기술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종합금융회사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정부부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설립과정	인가사항	특수법인	등록사항
자본금	50억 이상	요건 없음	100억원 이상
회사성격	민간 벤처캐피탈	공적 벤처캐피탈	창업중소기업 14년 미만 기업
지원대상	신기술사업 중소기업은 종업 원 1,000인 이하	제한없음 자금90%는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14년 미만 기업
자금조달	각종 기금, 금융기관 해외차 입, 조합자금 사채발행	정부의 저리융자 복권, 금융 채발행 자체 예수금	창업지원기금 조합자금 사채발행
자금운용	투자, 융자, 리스 팩토링	투자, 융자, 조건부 융자, 리스 팩토링	투자, 투자기업의 자금대여, 약정투자

1.2 창업투자정보(벤처사랑방)

벤처기업(창업희망자), 벤처캐피탈(개인 및 기관투자자) 및 벤처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을 상호 연결하여 우수한 기술, 자금과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벤처산업의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추진체계는 사랑방 가족으로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독창적 아이디어 소지자, 신기술 소지자, 대학 창업 동아리 등, 사랑방손님으로는 개인투자자(엔젤),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이 있고 사랑방 닥터로는 경영·기술지도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컨설턴트, 벤처기업지원기관 등이 있다.

1.3 벤처마트

벤처·창업기금의 자금조달 및 판로확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엔젤 클럽의 결성을 통

한 벤처기업의 직접자본조달 촉진 및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가대상은 벤처기업은 신기술 보유기업, 창업자, 벤처기업 보유자 등이고 투자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자 등이며 일반참가자는 벤처포럼 등의 행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다.

구체적 내용은 투자유치·상담, 현장참여 벤처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및 투자관련 질의응답, 즉석 투자상담 및 현장참가 벤처기업의 제품·견본 제시 투자자문 지원제도 소개 등이다.

1.4 벤처기업 전국대회

벤처기업의 홍보 및 기술전시 등을 통한 판로확대, 정보교류 등을 촉진시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의 상호교류 기회 제공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에 참가대상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참가기업의 선정기준은 신기술, 신제품,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업체,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기타 생산제품의 우수성과 경영합리화를 구축한 업체, 단순위탁기공, 생산, 소비·향락성 제품, 전시중량·부품 초과물품은 제외로 되어 있다.

구체적 행사내용은 벤처기업 제품·수출박람회, 벤처기업 대상 시상, 벤처기업 및 기업과 정지원유공자, 한민족 벤처포럼, 벤처 엔젤마트 등이다.

2.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2.1 입지지원제도

벤처기업에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입지를 싸게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직접 공업단지(국가 또는 지방공단)를 조성하고 이를 싼값에 분양하거나 또는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공장입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먼저 공업단지는 산업기지개발지역,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유치지역, 공업지역, 중소기업시범단지, 수출자유지역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입지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특정한 지역만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2 지적재산 보증제도

지적재산 보증제도는 벤처기업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1996년 과학기술처는 한국종합기술금융(KTB)내에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고 '기술담보대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기술담보대출제도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연간 3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조건은 최고 10억원까지 연리 10%, 1년 거치 2년내 상환조건이다. 국산 신기술 인정(KT마크) 제품, 장영실상, 벤처기업상 수상 기업과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된다.

2.3 조세지원제도

기업이 되도록 빨리 자금부담을 덜고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로는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수출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 협동화 및 계열화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액해 주는 것이다.

2.4 행정지원

창업자 혹은 중소기업자에게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이런 행정지원에는 상담지원, 정보지원, 기술지도, 인력지원 등이 있다.

행정지원은 주로 분야별 전담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상담회사, 각 행정단위별 창업민원실 등이 있다.

2.5 주식옵션제도

주식옵션(stock option)제도는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이는 벤처기업의 기술인력 확보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주식회사의 종업원지주제도와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꼭 필요한 일정기간동안(예, 3년) 매년 일정량의 주식을 계약시점의 주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렇게 하여 직원이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6 벤처캐피탈 회사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투자회사이다. 이 중에는 한국기술진흥금융(KTAC), 한국종합기술금융(KTFC) 등과 같이 창업투자와 용자를 병행하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있다.

그 외에 투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가 있는데 현재 50개사 이상이 있다. 이런 투자회사를 이용하면 창업과 기술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모을 수 있다.

2.7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는 창업에 관한 각종 정보와 기술 그리고 시설을 제공해 주는 기관이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사무실이나 통신시설, 연구시설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창업절차와 회사경영지도는 물론이고 제품생산기술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준다.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전문인력의 경영, 세무, 기술지도 및 행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제도이다.

그 대상은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자(업력 1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대기업자가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휴·폐업중인 자, 공해다발업종 영위자 등이다. 입주기간은 6개월~2년(사업주와 계약에 의해 1년 연장가능)이고 입주조건은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2.8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대학에 창업열기를 확산하고 대학가에 창업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창업에 뜻이 있는 대학생들의 조직적인 창업 준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전문대·대학(원)의 총장 또는 학장이 승인한 동아리(서클), 학교내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회원이 20명 이상이다.

지원내용으로 지원 한도는 동아리당 600만원 한도(1개 대학당 창업동아리 2개 한도), 사무용품 구입비, 운영비 지원, 사무용품은 PC,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화, 책상, 의자, 통신네트워크장비 등 운영비(지원총액의 10%이내)는 PC통신·인터넷사용료, 신문, 전문잡지구독료, DB 사용료, 선진벤처기업(실리콘밸리)방문경비 지원, 대학생 창업훈련과정 및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혜택 등이 지원된다.

2.9 창업경영대회

기술력이 있고 창의적인 대학생그룹 및 실험실의 교수, 연구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가 바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사회전반에 건전한 창업문화 및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젊고 우수한 예비창업자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2.9.1 대학생 창업경영대회

참가대상은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개인 또는 5인 이내로 구성된 팀으로 팀 구성시 여러 대학이 공동참여 및 지원교수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업종은 제조업, 소프트웨어, 디자인, 유통업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업종이며 심사방법은 지역예선대회(서류심사와 발표)를 통해 추천받은 팀을 대상으로 본선대회(최종발표 및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자가 창업시 특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센터 우선 입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창업훈련과정 우선 입교, 대학(원)생 등을 위한 벤처기업창업 자금지원 우선 심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부여(1억원 한도), 공공투자조합의 투자대상(1억원 한도) 등이다.

2.9.2 실험실 창업경영대회

참가대상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 또는 연구실의 연구결과를 사업화 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으로 팀 구성시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금속, 섬유화학, 생명공학, 영상 애니메이션, 기타 지식 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심사방법은 예비심사(사업계획요약서 발표), 서류심사(각 분야별 평가단), 발표심사(창업사업계획서 발표) 순이며 서류심사(30%)와 발표심사(70%)로 점수를 산정한다. 수상자 창업시 특전으로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육성자금 보증지원(5억원 한도), 엔젤 클럽, 창업투자회사 등 투자유치 지원,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지원, 창업시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이다.

2.10 벤처로드쇼

전국 대학 또는 연구단지 등을 순회하며, 미래창업의 주역인 대학생들과 연구원들에게 벤처기업 창업성공사례, 산학연구체제 구축 등의 발표와 벤처기업 지원시책 및 창업절차안내, 창업아이템페어 등을 실시하여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사내용은 벤처창업 지원시책 및 투자전략, 벤처창업의 지원정책과 방안, 벤처기업 성공사례, 벤처캐피탈의 투자전략, 벤처 경영기법의 확산, 산·학연구체제 구축과 벤처기업 창업 등이다.

참가대상은 이공계열 중심의 대학(원)생, 대학교수 및 해당지역 국·공립연구소 연구원, 지역소재 벤처기업자 및 벤처캐피탈 등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다.

2.11 중소기업 창업강좌 지원사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제도 및 창업성공사례, 창업절차 및 정부시책 등에 관한 창업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창업마인드를 확산하여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업지원기관 등 중소기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강좌 실시기관이다.

지정기관신청방법은 창업강좌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창업강좌 개설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에 신청한다. 지원내용은 1강좌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표준소요금액내에서 부족 경비에 한함)하게 된다.

2.12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경영·기술지도와 창업정보제공 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절차를 대행하는 전문 용역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및 경영·기술지도 용역 지원으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창업기업에 해당 사업계획의 타당성검토 및 각종 창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창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용역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은 상담회사가 용역을 제공하여 창업예비자가 창업한 경우, 경영·기술지도용역은 용역대금 지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의 해당 품목이 개발 완료되어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용역 1건당 용역대금의 50% 이내로서 200만원 이하로 지원(벤처기업인 경우는 300만원)하게 된다.

창업절차대행 용역지원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창업절차에 따른 창업자의 부담과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며 지원대상은 상담회사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대행을 이행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용역 1건당 용역대금의 50% 이내로서 250만원 이하로 지원(벤처기업인 경우는 300만원)하며 절차대행범위, 창업사업계획서 및 승인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대행 등이다.

VI. 요약 및 결론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지식경영상대의 국가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정책적 요인을 지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사업이다. 국내의 환경변화와 경쟁적 마찰 및 급격한 기술개발 등 국제화, 정보화 요인에 대응하려는 국가 의지의 지향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 4월 현재 등록된 벤처기업은 6,004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밝히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도산 또는 퇴출된 벤처기업의 수가 91개 기업이나 되는 등 그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문제를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벤처기업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통합적 접근, 문제와 창업위기 구조 및 현실적 생존, 자금 및 세제 활성화 접근, 투자 및 창업 활성화 접근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투자자금을 1조원 이상을 조성하여 1만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10만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산업자원부 관계자가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요인인 인재확보, 창조적 긴장감유지, 조직내부 혼란방지, 기술개발 열정유지, 모방확대신중, 연구개발과 지식경영 등 기본적인 분야가 문제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요인을 개선·활성화하고자 자금, 세제, 투자, 창업측면으로 세분화하였다. 당면한 활성화방안은

첫째, 벤처기업의 내실화 문제인데

- 1) 벤처투자자금조성 및 지원,
- 2) 벤처창업자금의 효율적 사용,
- 3) 벤처 창업종합지원체제구축,
- 4) 벤처인력의 확보 및 유지 등이다.

둘째는 벤처기업 투자기반조성 문제로

- 1) 벤처투자조합의 확대유인,
- 2) 자본시장 연계된 건설도 확보,
- 3) 엔젤 투자시장의 상설화,
- 4) 벤처캐피탈의 건전성.

5) 기술개발과 지식 경영 공유 체제 확보 등이다.

셋째는 벤처창업분위기 조성문제인데

- 1) 창업보육센터의 확대육성,
- 2) 벤처기업 지대법을 제정하여 기업간 집단연계망 구축 거점 확보,
- 3) 창조적 긴장감 유지 및 기업가 정신 문화정착,
- 4) 인허가 조건 등 행정지원 극대화 등이다.

넷째는 벤처기업의 세계화 전략문제로서

- 1) 벤처기업 세계화 지원단을 통한 진출 문호제공,
- 2) 정보화 네트워크망 운용,
- 3) 기존 현지 지원기관의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 4) 기술과 생산 및 마케팅의 전략적 제휴,
- 5) 국제 기술 박람회 개최 및 벤처 순회단 지속적 파송 등을 통한 세계화 감각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는 자금 및 세제지원 문제로서

- 1) 각종 투자기관의 활성화,
- 2) 창업투자회사 확대,
- 3) 엔젤 투자가의 상설화,
- 4) 금융기관의 벤처자금 지원 확대,
- 5) 소득세 감면,
- 6) 법인세율 축소,
- 7) 지방세 및 조세감면 특혜조치 등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의 제안은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극복해야할 애로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매우 긴요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적인 세부 실무적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연구나 정부 시책 등을 다수 인용 또는 번안한 부분은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인식한다. 다만, 벤처기업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도적 접근으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경목·정승화(1997), “하도급 네트워크와 하도급 기업의 성과 : 한국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19권, 제1호, pp.191~212.
2. 박춘엽(1998), “한국과 미국의 창업지원체계의 비교 : 벤처마킹식 접근,” 「한국중소기업학회지」, 제19권, 제1호, pp.270~272.
3. 남영호·김완민(1998),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 가능성 분석 :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1:1, 35~70.
4. 중소기업진흥공단(1999, 10), [벤처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5. 조병주(1999), “창업교육의 교과내용 결정모형과전공과목의 개발방향,” 「한국중소기업학회지」, 제18권, 제2호, pp.159~171.
6. 조형래, “창업인의 특성, 제품혁신성과 벤처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한국과학기술원, 1994.
상공회의소,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실태와 활성화 방안,” 1993.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창업기업의 성공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1996, 10. 30.
7. 조병주(1999), “창업교육 : 교육과정전개와 효과적인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27~48.
8. 지용희·방용태(1999), “일본과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과정과 시사점,”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75~102.
9. 한정화·이명자(1999), “한국의 창업교육실태와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5~26.
10. 현대경제연구원(1999), “우리 나라의 아웃소싱 活用實態와 아웃소싱 産業現況,” [VIP Report], 제216호.
11. 조형래(1999), “새로운 창업교육 방향,”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49~74.
12. Abetti, P.A. and R.W. Stuart (1987), “Product and Market Advantage,” *High Technology Market Review*, Vol.1, Issue 2.
13. Abraham, Katharine G and Taylor, Susan K. (1996), “Firms’ Use of Outside Contractor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4, July, pp.394~424.
14. Bettis, Richard A, Bradley, Stephen P. and Hamel, Gary (1992), “Outsourcing

- and Industrial Decline,"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February, Vol.6, No.1, pp.535~552.
15. Barney, J.(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pp.99~120.
 16. Chandler, Gaylen H. and Steven H. Hanks(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 pp.331~349.
 17. Corbett, M.F.(1996), "Presentation of Redefining the Corporation : Bringing Order to a New Industry," *From the 1995/96 Outsourcing Leadership Forum*.
 18. Chrisman, J.J., Hynes, T. and S. Fraser(1995), "Faculty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Case of The University of Calga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 pp.267~281.
 19. Cooper, A.C., Hornday, J.A., and K.H. Vespre(1997), "The Field of Entrepreneurship Over tim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0. Gartner, W.B and K.H. Vesper(1994),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 Successes and Failure," *Journal of Buiness Venturing*, 9, pp. 179~187.
 21. Hendry, C., Arthur, M.B. and Jones, A.M.(1995), *Strategy through People*, Routledge; Kay, J.(1993), *Foundation of Corporate Success*, Oxford University Press; Mintzberg H.(1978) "Patterns of Strategy Formation," *Management Science*, Vol.24, pp.934~948.
 22. Nam, Young-Ho(1998), "The Roles of Incubator Organizations in Hi-tech Venture Creation,"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Knowledge Creation Management In Asia, Singapore*, March 6-7.
 23. Porter, M.E.(1985), *Competitive Advantage*, Free Press. Prahalad, C.K. and G. Hamel(1990),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pp.95~117.
 24. Reed, R. and R.J., Defilippi(1990), "Causal Ambiguity, Barrier to Imitation, and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January, pp.88~102.
 25. Timmons, Jeffrey A.(1980), "A business plan is more than a financing device,"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pp.28~34.

Abstract

A Study of the Activational plan and the Problem of the Venture Business

Choi, Seong-wook · Kim, Hee-gyoo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problems and activation plans of venture business are as follows.

First, to ensure substantiality of venture business

- 1) To prepare and support venture investment capital.
- 2) To make effective use of founding capital of venture business.
- 3) To establish the overall supporting system for founding of venture business.
- 4) To maintain and ensure manpower for venture business.

Second, to prepare investment base for venture business

- 1) To induce the enlargement of venture investment unions.
- 2) To ensure the sound trust of KOSDAQ.
- 3) To permanently setup angel capital investment market.
- 4) To ensure joint system for R&D and knowledge management, and so forth.

Third, to promote environment for the founding of venture business

- 1) To enlarge and rear business incubator(BI)
- 2) To establish acts of venture complex.
- 3) To uplift creative tension feeling and entrepreneurship.
- 4) To maximum the support for administration approvals, and so forth.

Fourth, to make global strategy for venture business

- 1) To furnish oversea venture chances for globaligation to venture business.
- 2) To operate information network.
- 3) To establish integrating system of oversea support offices.

Fifth, to support capital and tax

- 1) To activate functions of investment organs.
- 2) To increase the number of venture investment company.
- 3) To permanently organize angel capitalists.
- 4) To reduce and exempt the corporation tax, and the like.

Above mentioned results of this study have to be practiced, and in future, subdivided studies will be needed.